

[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
합508640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1) 원고회사 -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 (2) 피고회사 -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

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

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모방한 피고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남경종합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로 하고 용역대금 3,557,000,000원인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설계도면을 납품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까지 마친 반면, 성수주택조합과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기 납품한 원고 설계도면을 첨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외에 설계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구상, 구체화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고,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

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창작성을 높이 인정받았는바,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이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원고 설계도면에서 비중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나 전체가 침해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상 용역비 40%의 지불비율에 해당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도 용역비 60%에 달하는 2,070,748,446원을 남경종합개발로부터 수령하였는바, 피고 두산중공업이 자금집행에 동의하여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설계도면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원고가 원고 설계도면의 저작권 행사로 향후 기대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액은 700,000,000원(즉 이 사건 제1 설계계약 용역비 40%인 1,422,800,000원 × 0.5)으로 정한다.

장래의 저작권 침해증지청구 -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

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의 경우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앞서 본 법률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침해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그 침해대상 권리 등의 행사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앞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도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는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십수년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